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한은경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오산시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화예술 기량을 향상하고 재능 있는 꿈나무 발굴·육성과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시 소속으로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전통무용단을 설치하고 어린이 전통무용단과 청소년 전통무용단을 각각 두도록 함(안 제2조).
- 나. 어린이무용단은 초등학생으로, 청소년무용단은 중·고등학생으로 하고, 각각 예술감독, 지도자, 반주자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4조).
- 다. 지도자등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함(안 제6조).
- 라. 단원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또는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공개모집과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함(안 제8조 및 제9조).
- 마. 무용단의 운영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바. 각종 경연대회 시상금과 초청공연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에 세입 조치 하도록 함(안 제15조).
- 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용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지도자등에게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4조).
- 아. 무용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9년 4월 1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화예술 기량을 향상하고 재능 있는 꿈나무 발굴·육성과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전통무용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용단의 설치)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전통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무용단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한다.

② 무용단에는 오산시 어린이 전통무용단(이하 “어린이무용단”이라 한다)과 오산시 청소년 전통무용단(이하 “청소년무용단”이라 한다)을 각각 둔다.

제3조(무용단의 활동) 무용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 공연
2.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3. 민간예술단체 또는 국내·외 예술단과의 교류 공연
4. 국·내외 무용경연대회 등의 참가
4. 그 밖에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등의 참여

제4조(구성) ① 무용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② 단장을 보좌하여 무용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 ③ 어린이무용단과 청소년무용단은 각각 예술감독겸 안무지도자(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 1명, 훈련지도자 2명, 반주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 ④ 무용단의 예술감독, 지도자, 반주자(이하 “지도자등”이라 한다)는 비상임으로 한다.
- ⑤ 어린이무용단은 초등학생으로 구성하고, 청소년무용단은 중·고등학생 또는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 제5조(직무 및 의무)** ① 시장은 매년 무용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무용단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시의 예산으로 편성한다.
- ②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무용단을 대표하며, 지도자등을 지휘·감독한다.
 - ③ 간사는 단장의 명을 받아 무용단의 운영과 지원을 총괄한다.
 - ④ 예술감독은 단원을 지도·지휘하며, 단원의 연습 및 공연 등에 관한 기획과 안무 등을 담당한다.
 - ⑤ 훈련지도자와 반주자는 예술감독을 보좌한다.
 - ⑥ 단장을 비롯한 지도자등과 단원은 전통무용인으로서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제3조각호의 활동과 제12조의 연습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자등의 자격 및 위촉)** ① 무용단의 지도자등은 전통무용과 관련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발한다.
- ② 지도자등의 선발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무용단의 구성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술감독의 추천을 통하여 훈련지도자와 반주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도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다시 위촉된 경우에는 연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지도자등의 해촉) 시장은 지도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지도자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단원의 자격) 무용단의 단원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또는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제9조(단원의 모집·선발 등) ① 무용단 단원의 모집은 정기모집과 수시모집으로 구분하고, 정기모집은 매년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실시하며, 수시모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결원에 따른 단원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단원의 위촉기간 경과로 보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무용단의 단원은 공개모집의 방법과 재학 중인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되, 면접 및 실기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개모집과 학교장 추천으로 모집한 단원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면접 및 실기전형의 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무용단의 단원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제8조의 자격을 유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선발절차를 생략하고 청소년

무용단의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단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 및 공연 등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불참하는 등 단원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무용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단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전출, 전학, 졸업 등의 사유로 제8조에서 정한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후원회) ① 무용단의 운영 및 발전과 전통무용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전통무용단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후원회 조직과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연 및 연습) ① 무용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공연을 할 수 있다. 다만, 해외 공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무용단 등의 공연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술감독은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시상금 등) 무용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시상금과 요청에 의한 초청공연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여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용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자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무용단을 직접 운영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용단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무용단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